

# 『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』의  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』에 대하여  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지난해 정부의 행정 전산망 오류로 인해

민원 대란이 발생하며

디지털 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

데이터와 인프라 관리, 개인정보보호 등의

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.

□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정보에 대해

디지털재난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위기관리 기반 구축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.

□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

안 제3조에는 디지털재난 대응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고,

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
안 제5조에는

안전점검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
안 제6조, 제7조에는

디지털재난 발생 시 고지 및 조치 사항과

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

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
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
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